

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 번호	2566
----------	------

봉양순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노원구3)

-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님,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- 반갑습니다.
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.
- 오늘 여러 위원들님께 「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2024년 3월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
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
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
조례안」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.
- 그동안의 시행 경과와 다양한 운영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
조성과 관리, 숲길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보완 및 정비함으로써
조례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
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추진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(안 제7조)
- 둘째,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.
(안 제11조제2항)
- 셋째,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. (안 제12조의2, 안 제14조의2)
- 넷째,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(안 제17조)
- 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 산림문화·휴양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!